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온 실 가 스 배 출 권 의 할 당 및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업종 확대(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업 외의 다른 업종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인 감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부터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되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도가 53.1%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함.

나. 시장조성자 지정 가능 대상 구체화(안 제37조)

시장조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구체화하고자 함.

다. 외국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삭제(안 제47조제3항)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가 강화되어 국외 시행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감소한 바, 할당대상업체들의 외부사업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시행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14. ~ 2021. 1. 2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제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제47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094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부칙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자
2. 제3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제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u>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말한다.</u>	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상쇄) ①·② (생략)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 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u>이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u> ④ (생략)	제47조(상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후단 삭제>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기후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6590